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 - 2557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구분	자치구	대상지역	면적(㎢)	허가대상
합계	22개구	59개 법정동	11.11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천호동	0.20	
	송파구	풍납동	0.07	
	동작구	노량진동, 사당동, 상도동	0.35	
	관악구	봉천동, 신림동	0.64	
	금천구	시흥동, 독산동	0.62	
	구로구	고척동, 구로동, 개봉동	0.69	
	양천구	목동, 신월동	0.52	
	강서구	화곡동, 등촌동, 방화동, 공항동	1.38	
	마포구	대흥동, 용강동, 성산동, 망원동, 합정동, 중동	0.74	
	서대문구	천연동, 옥천동, 홍제동, 현저동	0.10	**지목 「도로」 한정**
	용산구	원효로4가, 산천동, 서계동	0.07	
	중구	신당동	0.30	
	종로구	구기동	0.30	
	은평구	불광동, 대조동	0.39	
	도봉구	쌍문동, 방학동, 창동	0.58	
	강북구	번동, 수유동	0.82	
	동대문구	답십리동	0.08	
	광진구	자양동	0.38	
	노원구	상계동, 월계동	0.69	
	성북구	석관동, 종암동, 정릉동, 돈암동	0.30	
	중랑구	면목동, 중화동, 상봉동, 망우동, 묵동	1.66	
	성동구	마장동, 사근동, 행당동, 송정동, 금호동1가	0.23	

※ 허가대상 도로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으로 함.

2. 허가구역 지정기간: 2024년 9월 10일부터 2029년 9월 9일까지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공업지역	15㎡ 초과
	녹지지역	20㎡ 초과

4.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붙임1 참조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공고로 별도 첨부한 토지조서는 공고일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이동 및 등록사항정정 토지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 허가구역 대상 여부는 지정도면(구역 설정)을 기준으로 함.

5.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붙임2 참조

※ 토지e음(http://www.eum.go.kr)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부정보를 확인 가능

◎ 동대문구 답십리동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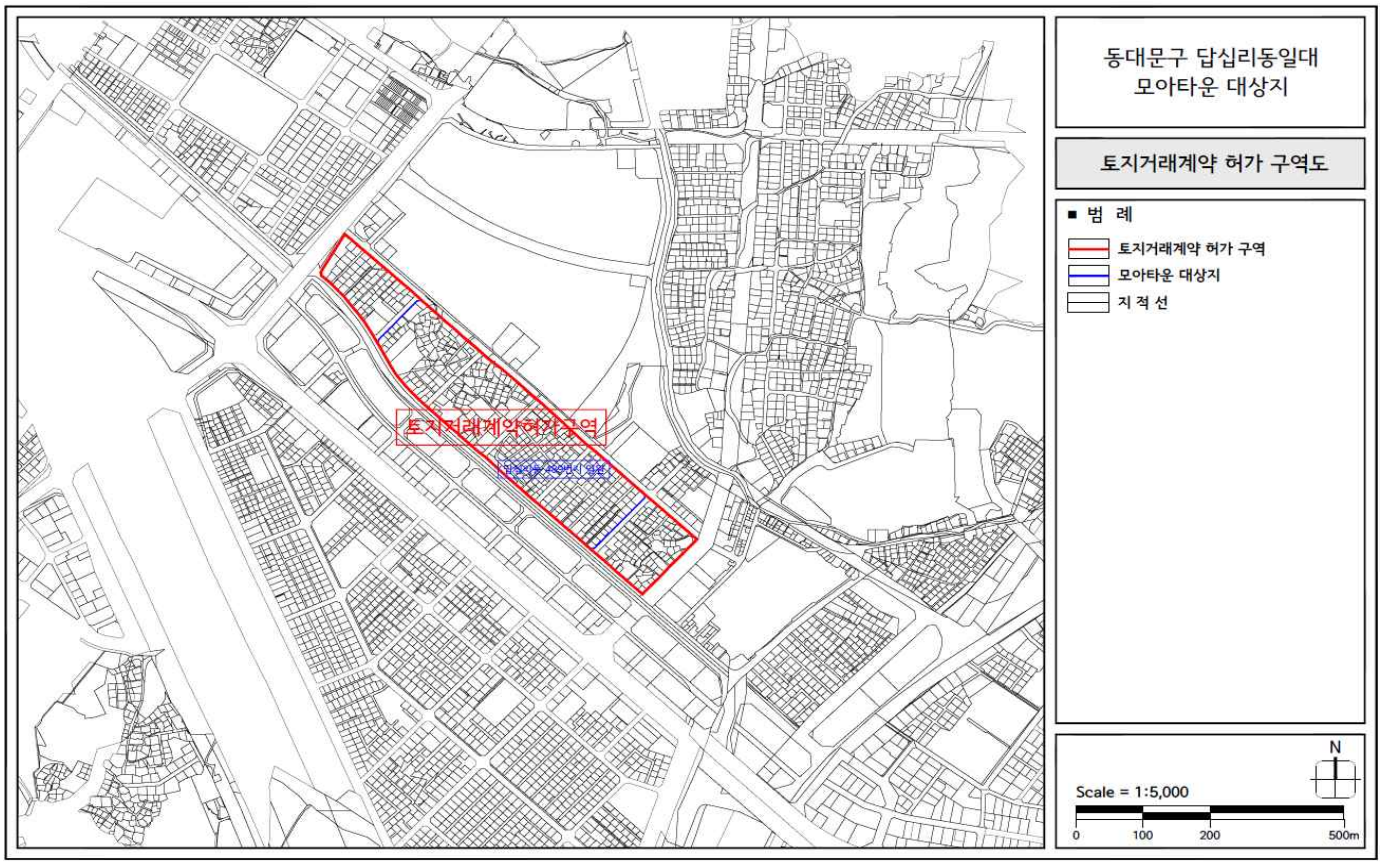

◎ 광진구 자양동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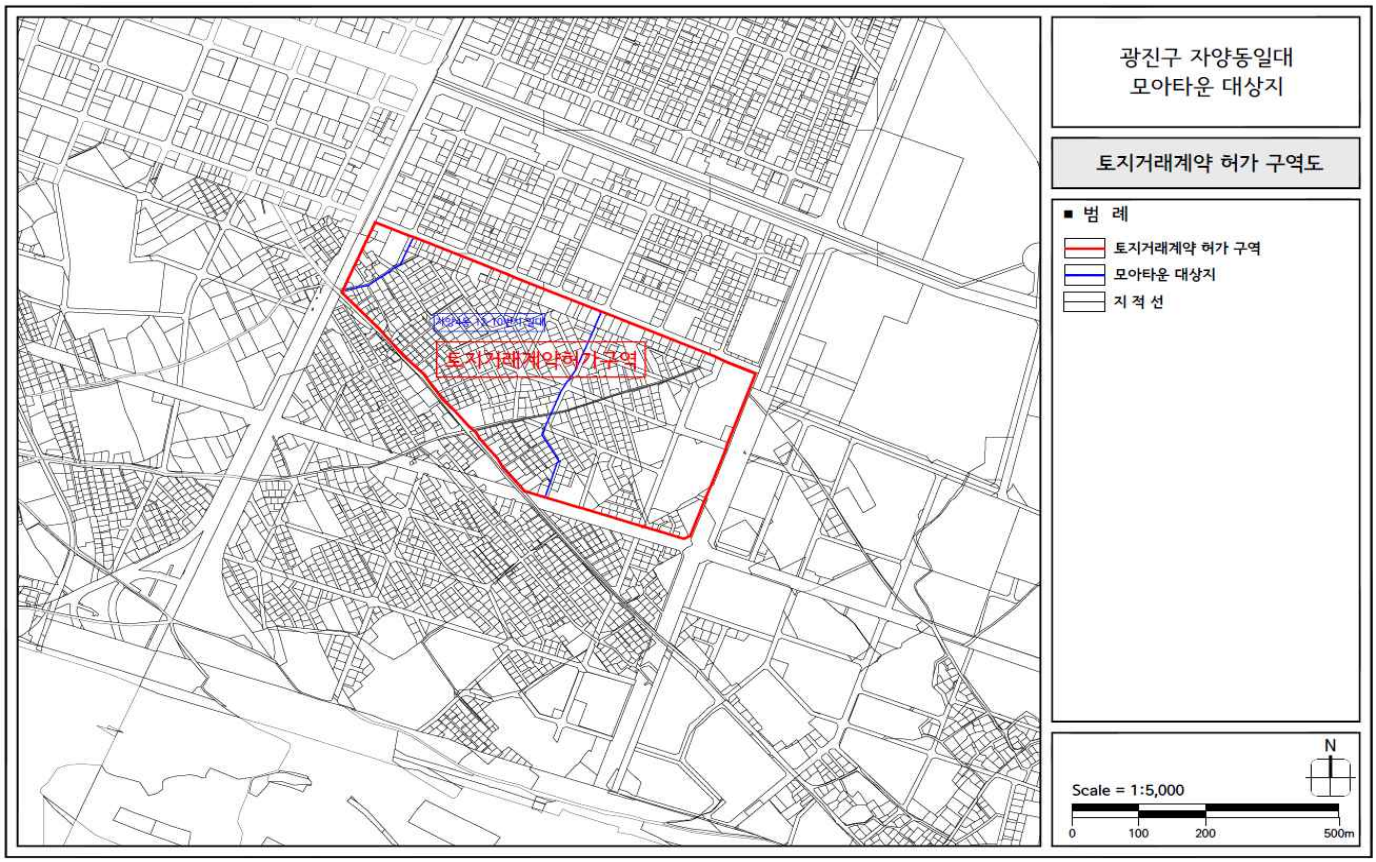

◎ 광진구 자양동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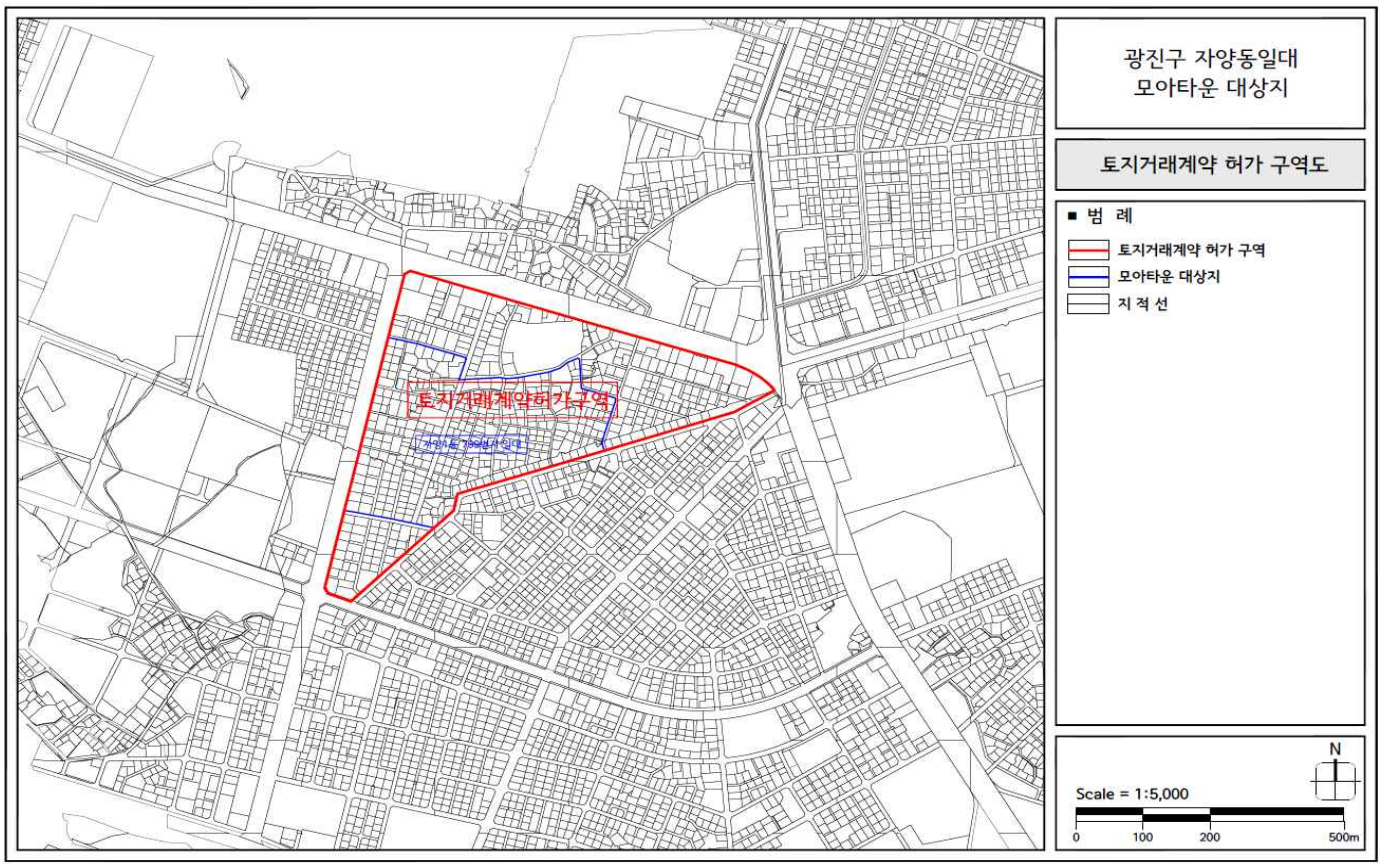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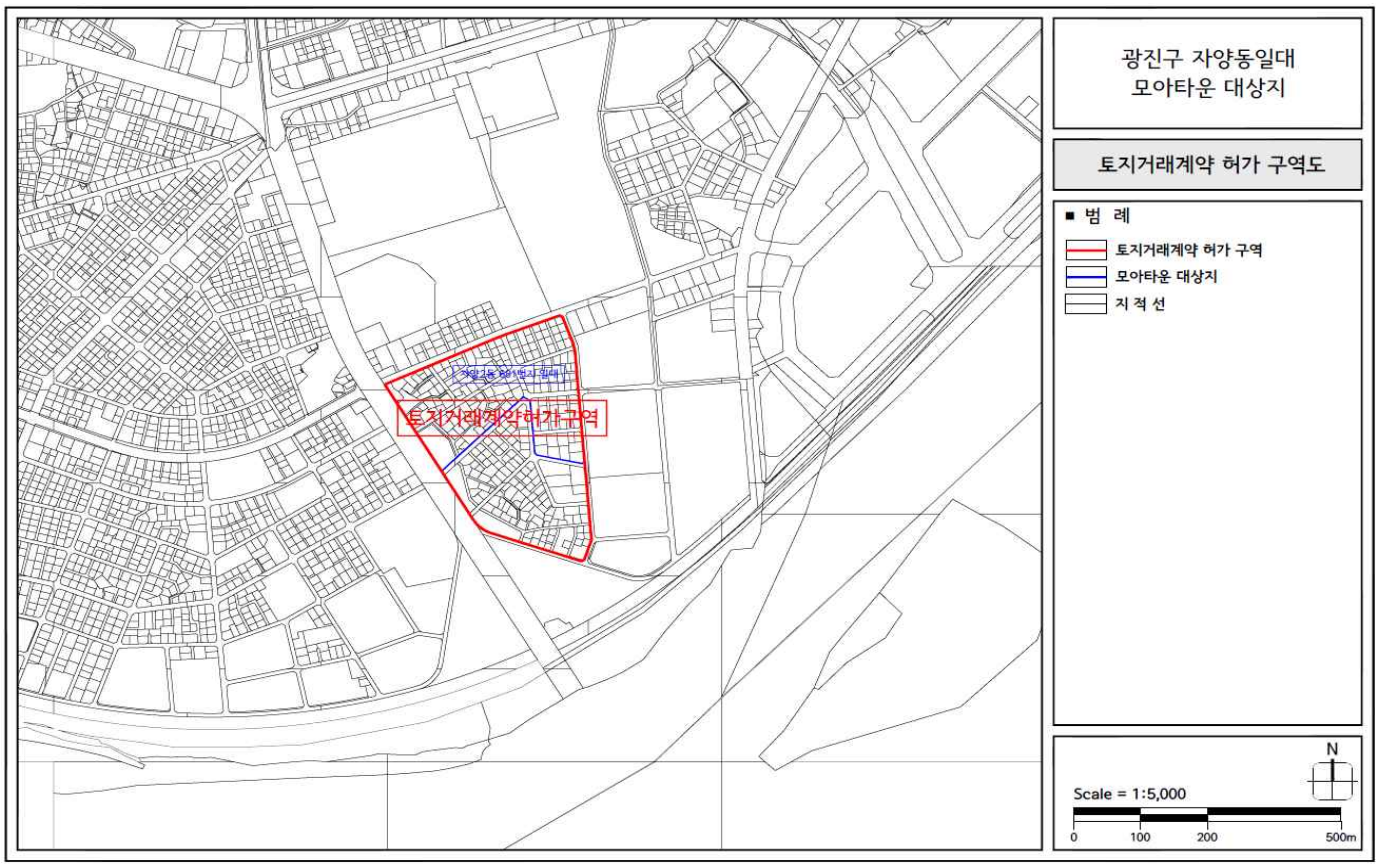
◎ 광진구 자양동 일대